

2020년 6월 1일

출입국체류관리청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회사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해고, 계약해지, 자택 대기 등의 어려움에 처한 분에 대해

① 취업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그대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1) 직장에서 해고 또는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분으로 취업활동을  
희망하는 분

(2) 직장에서 대기 명령을 받은 분 중 복직을 희망하는 분

(3) 직장에서 근무일수·근로시간 단축을 요구받은 분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분

(4) 기타 위의 (1) ~ (3) 에 준하는 분, 또는  
자격외활동 허가도 가능합니다.

직장의 사정에 의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자격외활동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  
혹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짜로  
정해집니다.

② 위의 ①인 상태로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분은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활동>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직장의 사정에 위해 해당상황에 처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외활동 허가도 가능합니다. 자격외활동에 대해서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혹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로 정해집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고용 악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변경(6개월)은 물론 자격외 활동 허가도 가능합니다.

(주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남은 대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분, 혹은 근무시간단축 형태로 계속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분 중 근무시간이 대기시간을 상회하는 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그대로 체류기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 ③ 유의점

(1) 취업활동 또는 대기기간에 따른 <특정활동>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이 복직 등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기기간 또는 근무단축기간 중인 분이 자격외활동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고용된 기관으로부터 자격외활동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동의에 대한 증명서류도 제출해 주세요).

(3) 기능실습생은 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